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환경변화와 시민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1) 총 정원 : 변동없음

- 집행기관 : 1,843명 → 1,841명(△2명)

- 의회사무기구 : 47명 → 49명(+2명)

나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제4조의 별표 3)

1) 정원 총계 : 변동없음

2) 일반직 계

- 4급 : 12명 → 13명(+1명)

- 6급 이하 : 1,731명 → 1,730명(△1명)

다. 한시 정원표(안 제6조의 별표 4)

1) 미래도시기획실(4급) : 삭제

2) 아시아육상추진단(5급) : 신설(존속기한 : 2025. 6. 30.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
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843명”을 “1,84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47명”을 “4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,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출장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890	1,890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848	1,848					
3급	1	1					
4급	13	9	1	1	1	1	
5급	97	47	3	6	5	11	25
6급이하 소계	1,730	1,73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7					
별정직 계	1	1					
5급 상당		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	
연구직 계	6	6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6	6					
지도직 계	34	34					
지도관	3				3		
지도사	31	31					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4]

한시 정원표(제6조 관련)

기 관 별	정 원		존속기한	비 고
	계	내 역		
아시아육상추진단	1	일반직 : 5급 1	2025.6.30.	아시아육상추진단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1,89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843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47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841명</u></p> <p>2. ----- <u>49명</u></p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-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생략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③ ~ ⑤ 생략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정 종 혁
	팀 장	김 혜 진
	담 당 자	허 수 범 (480-6773)